
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2006. 12. 7.

관광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상정일자 :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6. 12. 1 :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이 석 표)

제안 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(2005.8.4)에 따라 동법률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에서 규정한 ‘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「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구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-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
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
기능을 대행(안 제3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종)
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금별 기금운용
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
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
사료되나
- 안 제3조 「충청북도청소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기능과
「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기능에 대하여는
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“도 조정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하고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 ~ 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운용심의) 기금의 조성 <u>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지원기금의 조성,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.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. 기타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<u>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.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<p>③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 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기금지급대상) ①기금의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·미진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 구분 지급하고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체 근로청소년 시설등에 한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

①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·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.

제7조 ~ 제8조 (생략)

제5조(기금지급대상) ①-----

----- 심의위원회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심의위원회-----
----- (삭제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대상추천자 및 선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심의위원회-----

제7조 ~ 제8조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